

# 학생복지시설 운영 규정

**제1조 (목적과 범위)** ① 이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 (이하 '본 대학교'라 한다.) 학생복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학생복지시설이라 함은 체력단련실, 여학생휴게실, 탁구장, 풋살장, 농구장, 장애인 휴게실 생활관 체력단련실, 학생라운지 또는 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.

**제2조 (운영의 기본방향)** ① 이 시설은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적 취미활동 또는 단체 활동, 대학생활을 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함에 우선을 둔다.

② 이 시설의 혜택은 학생, 교직원에게 균등하게 주어지도록 한다.

③ 이 시설의 운영방침은 학생 및 교직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.

**제3조 (관장부서)** ① 학생복지시설은 학생처에서 관장하며 생활관 체력단련실은 생활관에서 관장한다. 단, 필요할 경우 학생회 또는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에 위탁 운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생처의 지도 감독 하에 운영 할 수 있다.

② 학생복지시설의 유지보수 및 청소는 총무처에서 담당한다.

**제4조 (운영위원회)** ① 학생복지시설 사용의 기본방침과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되 위원은 시설관리위원회와 동일하게 한다.

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한다.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생복지시설 사용의 기본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규정 개·폐에 관한 사항
3. 학생복지시설 사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
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5조 (이용자)** 학생복지시설은 본 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이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6조 (이용시간)** 학생복지시설 이용시간은 시설사용 기준에 준하며, 체육시설 이용시간은 09:00~22:00으로 한다. 단, 총장이 필요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**제7조 (이용의 제한)** 다음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.

1. 시설의 개보수
2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

**제8조 (용도변경)** 각종 학생복지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9조 (준수사항)** 학생복지시설 이용자는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학교가 정한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**제10조** (이용자의 변상 책임) 이용자가 이용수칙 준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.

**제11조** (이용자에 대한 지시·감독) 이용자는 학생복지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학교의 지시·감독을 받아야 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규정의 개정) 이 규정의 개정은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로 시행한다.